

제안설명서

(3206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- 의안번호 제3206번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은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3항에 의한 ‘감염병관리시설’을 신속 확충 하기 위해 올해 1월 「국토계획법」 시행령이 개정되어 용적률 완화 범위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용적률 상한의 120퍼센트 범위까지로 정하고,
 - 또한, 종합병원의 의료시설 확충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조례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까지 완화하고, 완화 받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관리시설, 응급의료센터, 중환자실 등 공공이 필요한 시설을, 나머지는 병원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,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2. 6. 13.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